
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
제 2019 - 686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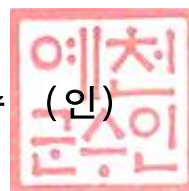
반출금지구역		면적 (ha)	피해상황		구분	행위제한 사항	위반 시 벌칙	
			장소	면적 (ha)				감염목 수 (본)
합계 (3면, 13리)		8,023		0.03	3			
보문면	작곡리	412	보문면 수계리	-	-	기존	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	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	옥천리	202		-	-	기존		
	우래리	862		-	-	기존		
	오신리	363		0.01	1	기존		
	산성리	602		-	-	기존		
	수계리	1,116		0.01	1	기존		
	기곡리	450		-	-	기존		
	오암리	855	보문면 오암리	0.01	1	추가		
	독양리	373	영주시 문수면 조제리	-	-	기존		
감천면	마촌리	303	보문면 수계리	-	-	기존		
	장산리	362		-	-	기존		
호명면	직산리	914	안동시 풍산읍 괴정리	-	-	기존		
호명면	황지리	1,209		-	-	기존		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

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27일

예천군수 (인)


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도면

